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1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4683 취득세등반환청구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
변 론 종 결	2017. 9. 28.
판 결 선 고	2017.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4. 수시분 취득세 23,965,180원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2016. 4. 25. 착오로 납부한 취득세(부당이득금) 23,965,180원(가산세 포함)을 반환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1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B은 본인 소유의 [redacted]구 C, 3동 4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2015. 12. 29.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하 '[redacted]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취득세 신고'라 한다)하였다.

나. [redacted]구청장은 신고한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자, 2016. 4. 7. 원고에게 취득세 21,805,000원, 지방교육세 1,869,000원, 가산세 291,180원 합계 23,965,180원을 납부기한 2016. 4. 30.로 정하여 징수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5.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취득세 등 23,965,1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취득세 신고는 원고의 남편 B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권한 없이 한 행위로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명목으로 부당이득한 23,965,18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7, 14 내지 1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22. 서초구청장에게 이 사건 취득세 신고는 B이 임의로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한 행위라며 이 사건 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B을 위 증여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여 B이 벌금 100만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1

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신고 당시 첨부된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25. B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B이 부부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B이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이며, B이 사업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숨길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원고와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부담할 취득세나 증여세가 당초 예상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자 이를 무위로 돌리고자 서로 상의하여 증여계약 해제 등을 주장하고 이 사건 소 제기 및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신고 당시 증여계약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B이 이 사건 취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취득세 신고 당시 첨부된 증여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히려 가산세까지 추가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된다. 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1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4. 25. 본인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2016. 5. 2.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위 법령에서 정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 4. 25.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항고소송으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 서초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 취득세는 특별시세로서 서초구청장이 이를 신고·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서초구청장이 취득세를 신고·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특별시이므로 취득세반환청구는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바(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7조),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기도 하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31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선아

판사 최선재